

2 (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일반법인)
	주세(교육세포함) ·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외부 · 자기조정),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6월말 결산법인 사업연도 변경기한
10(화)	토지 ·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9.16~9.30)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기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중업원할 사업소세, 증권거래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16(월)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중소기업)
25(수)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자 납부기한(개인)
31(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법인)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납부기한
	주세(교육세포함) ·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Y씨는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에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는 때에는 실제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